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보호원칙의 보완·개선 등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676호)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677호)
- 김승수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21호)
- 김성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06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 요	1
II . 검토의견	7
1.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원가정보보호원칙의 보완·개선(서명옥의원안)	7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보임(김예지의원안)	17
3. 금지행위 규정의 법적 규율 체계 조정(김승수의원안)	23
4.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김성원의원안)	32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6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19.
- (3) 회 부 일 : 2024. 11.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제75조제3항).

2.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67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9.

(3) 회 부 일 : 2024. 11.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3.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22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4.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30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9.
- (3) 회 부 일 : 2024. 12.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원가정보보호원칙의 보완·개선(서명옥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경우 아동의 원가정보
복귀 지원 원칙을 ‘그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게 된 때’
적용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방문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① (생략)	제2조(기본 이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u>안정된 가정 환경</u>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② ----- <u>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	③ ----- ----- -----

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⑦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

-----그 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게 된 때에 아동이 가정으로-----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성장·보호를 위한 지원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안전하고 안정된 가

정

3. -----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복리

에 반하지 아니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
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인
정되면

.

④·⑤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가정방문과 대면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면접·관찰 등을 할 수 있다.

④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략) 1의3. <u>제28조제3항을</u>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 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 4. (생략) ④ (생략)	③ -----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28조제4항을</u>----- ----- ----- 1의4.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①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안전’을 추가하고(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단순히 ‘신속성’을 요하는 것을 요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출 것’을 요하게 하면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성장·보호를 위한 지원 또는 조치를 하도록 하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친족이나 위탁가정 보호조치 및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 시 해당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출 것을 요하게 함과 아울러(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④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 방문과 대면조사로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현 행	개정안
기본이념	‘안정된’ 가정 환경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그 아동의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게 된 때’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조치	친족가정, 위탁가정 보호조치	안전하고 안정된 친족가정, 안전하고 안정된 위탁가정 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대상아동 가정 복귀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고, 해당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 복귀
사후관리 등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2회 이상 아동학대 접수된 가정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반드시 가정방문과 대면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48,522건,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5,739건인데,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1,336건으로 가장 많았음. 그럼에도, 학대판단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2023년 학대 판단 이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 >

(단위: 건)

2023년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	
원가정보호 (보호체계유지)	23,214
분리보호 (보호체계 변경)	2,393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325
기타	93

- 그 외,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21년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에도 전체 학대 판단 건수의 15.7%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4,048건에도 원가정보호 조치를 받은 사례가 3,365건으로 8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재학대 발생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3,431	3,671	5,517	4,475	4,048

* 재학대: 최근 5년간 신고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2023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3,365	(83.1)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662	(16.4)
기타	21	(0.5)
계	4,048	(100.)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의 부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통계에 기초하여 볼 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정으로 피해아동을 돌려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조치라 하겠음.

□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는 심리치료 결과, 신체건강상태 등 아동·보호자의 심신상태 및 가정복귀 의사, 보호자의 아동 양육계획, 가정 내 청결 상태 등 양육 환경 조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를 실질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2016. 3. 22. 「아동복지법」 개정(2019. 3. 23. 시행)으로 도입(제4조제3항)되었고,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의 보완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에 따른 구체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원가정 보호 원칙 관련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¹⁾ “이 협약의 서명국은 아동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애정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며,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²⁾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면접·관찰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안 제28조

1) 우리나라는 입양 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서명하였으나, 현재 가입 비준까지는 완료하지 못하였음.

2) 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

제3항)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현행법상 ‘안정된 가정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물리적·심리적·정서적 요건을 갖추 것을 포함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보호 및 퇴소 조치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원가정복귀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 원가정 보호 원칙에 대한 보완 규정은 이미 마련³⁾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방법·주기 등은 사례별로 전문기관의 상담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바, 법률에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기준을 일률적·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면조사 대상을 법률에 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 즉시 분리, ▲ 지자체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여부 결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 상담·치료 의사 등의 의견 존중,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 취소 등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보임(김예지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④ (생략)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u>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하고, 「지방공무원법」 <u>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임용 등에---</u>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2020. 4. 7.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시행 2020. 10. 1.)되었음.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이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업무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사 순응도를 제고하고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수요 및 재정여력 등을 고려하여 아동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학대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바, 2024년 6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875명을 배치한 것으로 집계됨.

< 시·도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24. 6월 기준) >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2	60	46	65	21	26	28	4	18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	26	49	46	53	55	51	14	875

□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주기적 순환 배치 대상인 ‘일반공무원’이며,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평균 근속 기간이 14.9개월에 그치는 실정으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 >

(단위: 개월)

시·도	'22. 12월 기준	'23. 6월 기준	'24. 6월 기준
서울	14.2	13.4	17.2
부산	13.1	14.9	14.9
대구	12.5	15.6	17.2
인천	11.9	14.7	14.3
광주	11.5	11.0	16.4
대전	9.4	14	13.6
울산	10.6	13.5	15.2
세종	9	10.7	9.2
경기	13.0	14.6	15.4
강원	12.5	13.6	17.1
충북	11.2	14.1	14.7
충남	12.7	14.5	15.3
전북	13.6	15.2	15.7
전남	7.7	11.2	13.7
경북	11.8	12.3	18.7
경남	12.4	11.8	12.3
제주	14.8	10.1	11.8

자료: 김예지의원실, 2024. 9. 18. 보도자료 참조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경우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 보임을 가능하게 하여 학대피해 아동 보호체계를 보다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5)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분야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5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③ 직위 지정이 가능한 특수업무 분야는 사진영상 촬영, 아동학대 전담관리, 청소년 수련지도, 체육진흥지도, 직업기능훈련, 생활보육지도, 생활관 사감, 농기계 교육수리, 항공사진 촬영판독, 경제분석리서치, 교역통상, 투자 유치 협상,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 비상대비 및 예비군, 화생방,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번역, 무대 공연전시, 인쇄발간, 나병관리 업무 등으로 한다.

□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변경하여 채용하는 경우, 그 실현 가능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행 제도상 ‘전문경력관’으로만 임용하여야 하는 직무분야는 없으며, 전문경력관 임용 시 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 증가, 장기 재직 시에도 일반직 대비 낮은 승진 가능성으로 직무 만족도 및

5)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담경력관으로만 임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임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위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시·군·구별로 전문경력관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각 1명씩 ‘추가 임용’하는 경우 연평균 80.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경력관 임용	7,709	7,855	8,004	8,156	8,311	40,035	8,007

주: 각 시·군·구에 전문경력관 다군(8급상당: 현재 아동학대전담 전문경력관을 채용한 서울 강남구 사례 준용)을 1명 추가 임용한 것을 가정한 추계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전문경력관 수 및 직급에 따라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장기 보임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875명에 달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모두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전직시키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전문경력관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수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자치권 제한, 전문경력관 제도의 문제점, 전문인력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경력관 임용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청취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금지행위 규정의 법적 규율 체계 조정(김승수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u>제17조(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u> <u>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u> <u>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u> <u>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u>	<u><삭 제></u>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
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
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
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
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
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

제66조(조사 등) ① -----

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주소·거소 또는
아동의 고용장소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삭제>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3. <u>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4. <u>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③ (생략) <u>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아동학대 관련 여러 문제들은 그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5,739건 중 2,495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됨.
- 우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3조제7호), 제17조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71조제1항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법으로서,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폭행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 및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 제외) 등으로 정의⁶⁾되고 있음.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상의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벌칙 등 ‘아동 학대범죄’와 관련한 사항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관하고, 「아동 복지법」에는 해당 법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조정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처벌법」만으로 총체적 해결이 가능 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⁷⁾.

-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항에서도 사법경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사건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개입(부모와 아동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등 응급조치 등)은 어렵다는 점 등 일선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⁸⁾도 제기된 바 있음.

□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법 으로서 아동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 금지행위를, 「아동범죄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금지행위 규정은 1981년 「아동복지법」 시행 당시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핵심적 조항인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7) 박지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28권 제2호, 2023.

8)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제27권 제4호(2020), p.273.

만큼 이관으로 인해 아동보호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논의는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 삭제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220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이 법안의 심사 추이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그 주체를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기관)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그 주체를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간 아동학대의 의의에 대한 혼란이 있으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법률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용어의 정의, 범죄구성 요건 변화에 따른 처벌 범위의 변화, 아동 보호 위축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
법무부	○ 현행 아동학대 대응 법제와의 충돌 우려 - 현행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법제가 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과 ② 별도의 절차적 특례를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원화된 취지는, 여러 아동학대 유형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그 발견이 어렵고, 사건 처리 시 아동의 복지 및 원가정보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특히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특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과 보호자에 의한 학대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려는 「아동학대처벌법」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아동복지법」 목적 달성 곤란 및 제도상 혼란 우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조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제17조에서 이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등 아동학대 금지규정 위반에 관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금지 규정만을 삭제하는 경우 법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제도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위와 같은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임
광주 광산구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에 대한 조사 거부 발생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법률에 근거한 사례판단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아동보호 공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부산 북구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근거가 없어져 담당자·지자체의 판단에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4.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김성원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각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생략)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략)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략)

<신설>

<신설>

1. ----- 주거·생활·교육·취업·진로·심리상담 -----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6년 -----

4.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급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② (생략)

<신 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

제38조의2(자립정착금의 지급기준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을 수립·고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시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 수립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

-----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
-----.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자립준비청년의 채용 지원과 관련된 것임.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안 제16조의2제2항) 및 국가가 이들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안 제38조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기준 자립자립준비청년 실업률은 15.8%로 우리나라 20~29세 청년의 실업률 5.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취업상태인 자립준비청년 비율은 47.6%로 나타나는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현실임.

<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상태 >

(단위:%)

구분	계	취업자(A)				실업률 (B/(A+B))
			미취업자	실업자(B)	비경제활동	
2023	100	52.4	47.6	9.9	37.8	15.8
2020	100	42.2	57.8	16.6	41.3	28.2

*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 조사(2024. 6. 26. 보도자료)

-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은 일 경험 기회 제공(24.2%), 고용지원금(18.5%),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취업상담·정보(15.5%) 순으로 나타난바, 개정안과 같이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다음, 자립정착금의 지급 기준 수립과 관련된 것임.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⁹⁾,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지원¹⁰⁾되는 것으로, 보호종료 당해연도에 지자체별로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

(단위: 명, 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	186	97,070	91	47,440	95	80,000	82	79,000
부산	125	73,700	107	73,600	91	48,400	82	57,500
대구	79	39,400	54	41,400	28	28,000	32	33,000
인천	84	67,200	56	44,500	31	30,100	36	36,000
광주	50	29,500	59	59,000	54	54,000	40	40,000
대전	61	30,500	56	42,700	32	32,600	27	25,800
울산	30	15,000	17	12,100	7	7,000	15	15,000
세종	9	4,500	2	1,300	1	1,000	1	1,000
경기	222	211,000	173	173,500	134	129,000	136	112,500
충북	82	41,000	57	39,000	41	39,800	24	23,500
충남	98	49,000	68	48,400	35	35,000	29	29,000
전남	142	69,900	111	103,000	69	65,000	80	53,200
경북	69	34,500	81	45,000	44	23,100	34	19,500
경남	138	70,200	113	76,000	57	55,300	37	42,100
제주	52	27,500	24	12,000	17	17,500	20	16,000
강원	86	43,900	81	55,500	28	16,850	16	8,500
전북	63	31,100	66	34,500	44	38,200	31	31,000

자료: 보건복지부

9) 법률 제19605호(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 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0)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 개요 >

-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 (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전체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
- (지원내용) 보호종료 당해연도에 지자체별로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 단가(권고) 인상 : 1인당 500만원('21) → 800만원('22) → 1,000만원('23)
 - **1993년부터 아동복지사업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시작, '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지급절차)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아동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압류방지통장 가능)
 -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교육 실시 및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 하도록 안내
- (추진 경과)
 - (1993년) 아동복지사업으로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 시작
 - * 자립정착금 100만원 지급(중앙보조율 50%, 지자체별 100~300만원으로 상이)
 - (2005년)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2012년)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자립정착금 지원 규정 마련, 가정위탁 포함 등을 통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2017년)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통해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등 과제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1.7)
 - (2022년) '22년 1인당 자립정착금 최소 800만원 이상
 - (2023년) '23년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24년 지급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2,000	1,000	1,000	1,000	1,000	1,500	1,000	1,000	1,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0	1,500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자립정착금은 현재도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¹¹⁾에

- 1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③ (생략)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통하여 통일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나 자립준비청년 인원 수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립정착금 규모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자립정착금 지급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것임. 개정안 제39조의2제2항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통하여 전담인력 등 관련 인력 간 교류 활성화, 전담기관 간 우수사례 홍보 및 민간자원 관련 정보 공유,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사후관리·사례관리 등 주요 현황 통계 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분기별 자립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주요 사업 실적 모니터링, 전담인력 교육 실시 및 간담회 개최, 공모전 등 우수사례 홍보 및 자립지원 통합플랫폼(‘자립정보 ON’)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음.

□ 다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하여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하여

대상자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복e음(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관리)를 통하여 지급·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매월 실시하도록 바꾸는 것이 발굴에 더 효율적일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발굴 절차 >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한 대상자 발굴

① (1차) 자립준비도 점검 시 안내 (아동의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과의 면담 등 통해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보호종료가 결정된 경우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아동과 함께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② (2차) 보호종료 점검 시 안내 (아동의 보호종료 예정일 1개월 전)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해당 아동의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연계 시 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신청 등 안내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는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신청 안내 및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③ (3차) 보호종료 후 안내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 재안내

○ 지자체에서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한 지급·관리

- 시설·자립위탁센터 지원으로 작성된 아동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지자체에서 접수하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등 필수사항 확인 후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연계 등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
- 지자체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미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 조치

□ 그 외, 안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자립지원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관련 지원 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간 협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 안 제38조제1항제1호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정책 집행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액 등을 시행 규칙에 규정할 경우 운용상 경직성이 우려되며,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의 설치는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